

## 대기환경분야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 비 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기관련환경법들의 특색을 간단히 보면, 기존의 명령, 통제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경제적 유인요소를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등 수단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모색하여 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오염원에 대한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선오염원이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에 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 1년간의 대기환경분야의 입법경향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관련환경법의 특정제도에 국한된 검토가 아닌,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특별법 및 녹색성장법의 일부를 대기관련환경법으로 다루어 대기환경정책 전반의 경향을 검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요법적인 입법해결방식에 대한 반성에 기반하여 대기관련환경법 상호간의 종합적, 통일적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태도의 변화를 이 논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논문과 관련하여 발표자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은 1) 저공해자동차 연료인 천연가스 사용과 2)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명령제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방지에 한층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5쪽에서 연료손실문제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부 판례와 논문들은 특정 환경매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에너지 고갈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자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료손실방지’를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4쪽과 관련하여 저공해 자동차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토론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평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주된 이유가 관련 업계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문제는 관련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나머지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다른 나라와 달리 전기자동차가 또 다른 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리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한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오히려 늦어지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이 관련 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개정 규정이 그리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없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입법과정의 문제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입법 관련 필요 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 업계의 발언 뿐만이 아닌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셋째,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녹색성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녹색성장기본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아니한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법은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바라

보기 쉽지만, 사실 거의 모든 행정 관련 법률은 기본권 주체 사이의 이익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이익형량이 필요한 장소를 미리 예측하여야 하는데, 완벽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재량행정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법치주의에 불구하고 불확정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이 이익형량과 관련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당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녹색성장기본법이 그러한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과 다른 어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입법만을 위한 입법은 아닌지,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만이 주된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그러한 점 때문에 기존의 환경 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등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만으로 얻어 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 녹색성장의 개념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도 전혀 아니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소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